

의 안 포 함	제2305호 ~ 제2308호
------------------	-----------------

2022. 10. 26.(수) 10:00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

검 토 보 고 서

안건 : 4건(개정안 3, 관리계획안 1)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백윤석

목 차

-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1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05호
- 제출일자 : 2022. 10. 17.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회부일자 : 2022. 10. 18.

2. 제안이유

- 입주 자격 중 장성군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관내 무주택 독거노인 입소를 장려하고 공실률을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주 신청 자격 완화 (안 제7조 제2항)
 - (현행) 3년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
 - (개정) 1년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

4.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장성군 사랑의 집 입주 자격 중 장성군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관내 무주택 독거노인 입소를 장려하고 공실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으로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한 것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치 내용을 반영하였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06호
- 제출일자 : 2022. 10. 17.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회부일자 : 2022. 10. 18.

2. 제안이유

- 장기기증 제도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및 유가족 지원강화에 따른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무연고자 유골 관련 단서 삭제 (안 제12조제1항)
-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규정 추가 (안 제13조제1항)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4.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가족 지원강화에 따른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07호
- 제출일자 : 2022. 10. 17.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회부일자 : 2022. 10. 18.

2. 제안이유

-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 추가 (안 제3조제3항)
 - 영아 등의 경우에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 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 추가 (안 제5조제4항)
 - 장기기증 등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지연, 천재지변·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지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4.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영아 등의 경우에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을 추가하여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08호
- 제출일자 : 2022. 10. 17.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2. 10. 18.

가.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

가-1. 제안이유

- 청년지원 종합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가-2. 주요내용

- 사업명: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
- 위치: 장성읍 영천리 1486-4 등 2필지
- 매입규모: 3,365.56㎡(군유지 : 1675.56㎡ , 매입토지 : 1,690㎡)
- 소요예산: 1,950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구분	재산의표시	면적(㎡)	예정가액(백만원)	취득사유
계	2필지	1,690	1,950	
토지	영천리 1486-4	1,316	1,500	청년문화센터 건립
	영천리 787-9	374	450	

가-3.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및 제12조

가-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청년지원 종합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청년 거점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가-5. 첨부서류 : 생략

나. 「 장성호 적송 군락지 매입 」

나-1. 제안이유

- 장성호 주변 적송 군락지를 매입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함.

나-2. 주요내용

- 사업명: 장성호 적송군락지 매입
- 위치: 장성읍 용곡리 산77-1 등 14필지
- 매입규모: 14필지 87,352㎡(26,424평)
- 사업기간: 2022. 10 ~ 2023. 12.
- 소요예산: 400백만원(≒26,424평 × 15,000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구분	재산의표시	면적(㎡)	예정가액(백만원)	취득사유
계	14필지	87,352	400	
토지	14필지	87,352	400	적송군락지 매입

나-3.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및 제12조

나-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장성호 수변길 주변 적송 군락지를 매입하여 적송 군락지 보호는 물론,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나-5. 첨부서류 : 생략

의 안 포 번호	제2309호
-------------------	--------

2022. 10. 26.(수) 11:00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

검 토 보 고 서

- 안건 : 1건(개정안 1)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광수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09호
- 제출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출일자 : 2022. 10. 17.
- 회부일자 : 2022. 10. 18.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 시행령 제31877호, 2021. 7. 6.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개정 요청 접수
 - 민원봉사과-45871(2021.7.23.),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협조 요청
 - 민원봉사과-40271(2022.6.30.),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협조 요청
- 그 외 조례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 보완 및 개선

3.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주민의견 재열람·공고 규정의 명확화(안 제8조제1항)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3년) 신설(안 제15조의2)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폐율 반영
(안 제55조)
-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 30%
완화 요건반영(안 제57조의2)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적률 반영
(안 제60조제1항)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개정(별표 4~21)
-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정비
 - 발전시설 허가기준 예외조항 변경(안 제20조의2)
 -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신설(안 제27조의2)
- 그 외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적용법령 변경(안 제12조)
 - 도시지역 내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5천제곱미터 이상) 명확화(안 제15조)
 - 개발행위 규모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명확화(안 제27조)
 -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안 제31조)
 - 경관지구 세분의 명칭 변경(안 제40조)
 - 기타 용도지역·구역 등의 용적률 대상 명확화(안 제6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재구성(별표 1~24)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정비 및 그 외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지붕 위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적용대상을 농업용 시설에서 작물재배사로 범위를 축소” 하였으며 “조례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지붕 위 태양광 조항의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는 조치내용을 반영하였음.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2311
----------	------

2022.10.28.(금) 10:00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2. 10. 17.
- 제출자 : 장 성 군 수
- 회부일자 : 2022. 10. 25.

II.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

1. 편성개요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함.

2.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882억 3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5,719억 9백만원 보다 163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됨
- 그 중 일반회계는 5,765억 7천 2백만원으로 161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16억 6천 6백만원으로 1억 8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가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588,238	571,909	16,329	2.86	
일 반 회 계	576,572	560,426	16,146	2.88	
특 별 회 계	11,666	11,483	183	1.59	
의료급여사업	1,162	1,162			
공공실버주택	1,303	1,303	0	0	
건축진흥	205	205	0	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155	155	0	0	
주차장 운영	2,159	2,159	0	0	
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	133	133	0	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76	76	0	0	
드림빌	1,210	1,210	0	0	
주민소득지원 기금	413	413	0	0	
상수도사업	4,849	4,666	183	3.92	

① 일반회계

○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가정예산 5,604억 2천 6백만원보다 161억4천 6백만원이 증액(2.88%)된 5,765억 7천2백만원임.

○ 세입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38억3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4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0억 3천8만원이 증액되고 국비보조금은 1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2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은 4억 2천6백만원이 증액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항 목 별	추경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576,572	100	560,426	16,146	2.88	
지 방 세	43,708	7.58	39,874	3,834	9.61	
세 외 수 입	18,713	3.25	18,252	461	2.53	
경상적 세외수입	8,940	1.52	6,175	△160	△1.76	
임시적 세외수입	9,865	1.68	8,572	804	8.88	
지방행정체제·부과금	3,698	0.63	3,505	0	0	
지 방 교 부 세	289,223	50.16	280,185	9,038	3.23	
조정교부금 등	8,976	1.56	8,550	426	4.99	
보 조 금	183,180	31.77	181,838	1,342	0.74	
국 고 보 조 금 등	135,290	23.46	135,171	119	0.09	
시·도비보조금 등	47,890	8.31	46,667	1,223	2.6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771	5.68	31,727	1,044	3.29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은

- 먼저, 자체사업으로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 20억원, 장성호 수변백리길 조성사업 25억원,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사업 15억원, 회전교차로 가로화단 조성 2억원, 적송군락지 자원화 사업 토지매입비 4억원,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2억원, 위드쿱 지원사업 2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 또한, 보조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5천5백만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8천9백만원, 삼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억원,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2억5천만원, 월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8억4천9백만원 등이 계상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구성비(%)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증감액	증감율
계	576,572	100	560,426	16,146	2.88
인 건 비(100)	62,975	10.92	62,879	95	0.15
물 건 비(200)	33,122	5.74	32,715	407	1.24
경 상 이 전(300)	223,169	38.71	224,060	△891	△0.40
자 본 지 출(400)	243,534	42.24	228,349	15,186	6.65
내 부 거 래(700)	4,028	0.70	4,028	0	0
예비비및기타(800)	9,744	1.69	8,395	1,349	16.07

② 특별회계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8천 2백만원 보다 1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116억 6천 6백만원임.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억 8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항 목 별	추경예산안	구성비 (%)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11,666	100	11,482	183	1.59	
세 외 수 입	3,790	31.10	3,607	183	5.07	
경상적 세외수입	2,925	26.10	2,925	0	0	
임시적 세외수입	672	3.29	489	183	37.42	
지방행정지재·부과금	193	1.68	193	0	0	
보 조 금	176	1.93	176	0	0	
국고보조금 등	149	1.63	149	0	0	
시·도비보조금 등	28	0.30	28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00	66.00	7,700	0	0	
보전수입등	4,634	39.72	4,634	0	0	
내부거래	3,066	26.28	3,066	0	0	

- 세출예산은 자본지출로 1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부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1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구성비(%)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증감액	증감율
계	11,666	100.05	11,483	183	1.59
인 건 비(100)	315	2.76	315	0	0
물 건 비(200)	3,147	26.97	3,147	0	0
경 상 이 전(300)	995	8.52	995	0	0
자 본 지 출(400)	4,395	37.67	4,212	183	4.34
용자및출자(500)	400	3.43	400	0	0
내 부 거 래(700)	152	1.31	152	0	0
예비비및기타(800)	2,262	19.39	2,262	0	0

Ⅲ. 검토의견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기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163억원의 가용재원이 새로 발생하였음
-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재원을 신규사업 등에 반영하였으며, 그 동안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주민편익사업 등 군민들의 불편함을 즉시 해소하는 현안사업에 집중 편성함.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은 장성군의 발전된 모습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